

12. 정치과정

- ▲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사회 구성원인 개인, 집단이 요구와 지지가 표출, 집약되어 정책결정기구에 투입됩니다. 그리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산출이 이루어지고 정치주체에 의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와 재투입등 환류의 과정을 거친다.
- ▲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책 결정기구에는 국가기관인 입법부, 행정부, 사법부가 포함된다.
- ▲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책에 대한 요구,지지, 반대 등 투입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된다.
- ▲투입은 시민들이 자신들이 요구나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출하는 행위로 그 과정에서 언론은 여론 형성을 주도하기도 한다.
- ▲환류는 정책 결정 집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 수정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는 과정이다.
- ▲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환류 또는 투입 기능에 해당한다.
- ▲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투입보다 산출의 기능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.
- ▲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보다 환류의 과정이 활발하게 나타난다.
- ▲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주로 국가기관이 정치 과정을 주도하여 산출 후에 투입의 과정이 일어남에 반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입 후에 산출과정이 일어난다.
- ▲언론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산출의 예가 아니라 투입의 예에 해당한다.
- ▲환류를 통하여 산출에 대한 평가와 재투입이 이루어진다.
- ▲대표자 선출을 위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는 정치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회 구성원의 요구와 지지의 행위로 투입에 해당한다.
- ▲시민단체 및 이익집단은 사회구성원의 집단으로 정치주체에 해당되며, 정책 결정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▲국민투표 또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집단 차원이 아닌 개별적 정치참여 유형에 속하며 시민 단체의 활동은 집단 차원의 정치참여이다.
- ▲국민투표 또는 선거는 지속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아니며, 시민 단체활동은 지속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다.
- ▲정치체계의 투입과정은 정치사회화와 정치충원의 기능, 이익표출 기능, 이익 집약 기능,정치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는다.

13. 선거

- ▲중대 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내에서 당선자간 표의 가치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.
- ▲중대 선거구제에서는 사표 발생가능성이 낮아져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.
- ▲소선거구제는 양당제 정착으로 정국이 안정되지만 다양한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기 불리하다.
- ▲소선거구제의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며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다.
- ▲중대선거구제에서는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며 전국적 인물의 당선에 용이하다.
- ▲중대선거구제는 정책 실패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정당제도가 형성될 것이다.

14. 정치참여

- ▲양당제는 정당의 정치적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정국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다.
- ▲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라면 연립정부 구성이 필요한 경우는 다당제이며 이 경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.
- ▲다당제의 경우 소수 집단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될 것이며 이념적 정체성이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여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을 것이다.
- ▲양당제와 다당제 모두 복수 정당제가 구현된 것이므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.
- ▲정당은 각종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민의 대표를 배출하는 정치적 (엘리트) 총원 기능을 수행한다.
- ▲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므로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지 않는다.
- ▲정당은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.
- ▲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대의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.
- ▲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은 모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지만 법률안을 발의하지는 못한다.
- ▲정치과정에서 공식적 참여자인 국가, 지자체, 당정협의회에 반하여 **정당**, 시민단체, 이익집단은 모두 **비공식적 참여자**로서 정치 사회화 및 정치과정에서 투입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5. 계약/미성년자

- ▲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를 통해 성립하는 것이지 문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.
- ▲만취하여 의식 불명의 명정상태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계약은 무효이다.
- ▲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받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.
- ▲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.
- ▲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.
- ▲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오토바이를 구입한 경우 **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에 해당되므로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**
- ▲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.
- ▲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계약 취소권 행사 시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.
- ▲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에는 **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** 그리고 계약의 상대방은 **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**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에 대한 **확답을** 요구할 수 있다.
- ▲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와의 거래를 취소할 것인지를 확정하는 **확답의** **촉구는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** 해야 한다.
- ▲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때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.
- ▲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. 따라서 체결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.
- ▲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 계약에 대한 취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▲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에게서 받은 용돈으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.

16. 손해배상

- ▲가해자가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.
(과실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가능하다는 점을 지문을 통해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.)
- ▲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부모를 상대로 **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책임**을 물을 수 있다.
- ▲공작물 등의 소유자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무과실 책임을 진다.
- ▲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여야 한다. 따라서 피용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사용자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▲공작물의 소유자는 해당 공작물에 대한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도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질 수 있다.
- ▲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특수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.
- ▲동물의 소유자와 동물의 점유자가 상이한 경우 그 동물이 피해를 입혔어도 동물의 소유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▲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.
- ▲불법행위는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성립될 수 있다. 따라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도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.
- ▲공작물의 점유자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2차적 책임을 지는 공작물의 소유자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▲채무불이행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 당사자끼리 지는 책임이다.
- ▲사용자 배상 책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.
- ▲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.

17. 부부간의 법률관계

- ▲ 당사자가 혼인을 합의해도 신고한 때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.
- ▲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.
- ▲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의 합의만으로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.
- ▲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**이혼판결이 확정**되면 이혼신고가 없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.
- ▲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**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위해 법원을 거쳐야** 한다.
- ▲ 협의상 이혼은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문제를 결정하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기간을 거친 후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**시청이나 구청 등에 이혼 신고**를 하는 것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.
- ▲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**면접 교섭권**을 갖는다.
- ▲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**법률혼을 전제로** 하여 **가정법원의 개입을 요건**으로 하며 **유책 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**가 가능하다.
- ▲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의 제기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정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.
- ▲ 재판상 이혼의 경우 필수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18. 친자관계 유언과 상속

- ▲ 사실혼 관계에서는 부모가 인지를 하는 경우에 법적 친자관계가 형성된다.
- ▲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생 부모와의 모든 법적 관계가 종료되고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므로 친생 부모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.
- ▲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.
- ▲ 상속권자가 아닌 자는 이를 전제로 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19. 범죄와 형벌

- ▲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- ▲자신에게 돌진하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하여 가게 물건을 파손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.
- ▲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받아 법정에서 위증한 행위는 피할수 없는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.
- ▲격투기 선수가 시합과정에서 상대 선수에게 중상을 입힌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.
- ▲심신 상실 상태에서 행해진 범죄행위는 책임조각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이다.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감호라는 보호처분에 행해질 수 있다.
- ▲12세인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가정(지방)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.
- ▲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형사처벌 할 수 없다.
- ▲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는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이다.
 - * 구성요건과 범죄의 성립요건을 구분할 것 (범죄의 성립요건 > 구성요건)
- ▲범죄 성립요건 중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행위를 판단 대상으로 함에 반해 책임능력은 행위자를 판단 대상으로 삼는다.
- ▲피고인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.
- ▲보호관찰은 선고유예, 집행유예, 가석방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함께 부과될 수 있다.